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[별지 제69호의12서식] <신설 2021. 3. 16.>

연안화물선용 경유 교통·에너지·환경세 감면세액 환급내역 통보서

년 월 신고분 납세의무자별 환급 결정내역

①일련번호	환급대상자 인적사항						⑧환급세액(원)
	②상호(법인명)	③성명	④사업자등록번호	⑤주민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	⑥환급계좌(금융기관명)	⑦전화번호	
				( )	( )	( )	
				( )	( )	( )	
				( )	( )	( )	
				( )	( )	( )	
				( )	( )	( )	
				( )	( )	( )	
				( )	( )	( )	
				( )	( )	( )	
				( )	( )	( )	
				( )	( )	( )	
				( )	( )	( )	
				( )	( )	( )	
				( )	( )	( )	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12의7제3항에 따라 교통·에너지·환경세의 감면세액 환급내역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.

년 월 일

세 무 서 장직인

울산광역시장 귀하
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세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세율 변경 전·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. 2. 칸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합니다.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 80g/㎡]